■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22호서식]

출·퇴근 가능 확인서

※ 본인선택 당시 복무기관으로부터 먼 거리(타 시·군)에 거주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사람만 작성합니다.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집: 휴대폰:	
본인선택 복무기관 / 선택사유	복무기관명	
	복무기관 주소	
	선택사유 (※ 해당란에 [∨]표시) ☐ 가족 및 친인척 거주 ☐ 출·퇴근 가능 인접 타 시·군 거주 ☐ 전입(거주지 이전)예정	

선택사유에 따른 세부사항		
친·인척 거주	성명	관계
	주소	
전입(거주지 이전)예정	주소(이전할 주소)	
교통편 (공통)	대중교통 노선표	소요시간(분단위까지 기재)
필수 유의사항	1.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은 출퇴근 근무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정되므로 복무기관 배치 이후에는 출퇴근 곤란 사유로 복무기관 재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복무 중 출퇴근 곤란 사유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신청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소이전 내역, 동거가족 여부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는 출퇴근 가능 확인서 상의 가족·친인척 거주지 또는 전입예정지에서 복무기관까지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히 진술(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무자(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지방병무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